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송달기한을 달리 정하는 대상에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추가함.

나.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및 재신체검사 근거 마련(안 제17조)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병역처분하도록 하고, 신체등급 7급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재신체검사 실시하도록 함.

다.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자의 재병역판정검사 기산시점 명확화(안 제18조의2)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기산시점을 명확히 함.

라. 병역자원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기한 설정 등(안 제18조의3)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통지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자원구분에 따라 정상자원은 검사일 30일전 별도자원은 3일전 까지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입영부대 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등(안 제18조의4)
입영판정검사 시기, 입영판정검사 실시 곤란사유 등 법(제14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희망자 검사 실시 근거 및 입영부대 신체검사 실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

바.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 명시(안 제18조의5)
법(제14조의3제6항)에서 위임한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을 정함.

사.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추가(안 제20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 후,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으로 판정된 사람을 별도 입영대상자에 추가함.

아. 입영신체검사 및 귀자 조문 삭제에 따른 보완(안 제25조 및 제26조)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자 관련 조문이 삭제(법 제17조) 되었으나, 부득이한 경우 입영신체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귀가자 발생에 대비한 귀가자 처리근거를 마련함.

자. 입영·소집대상자별 입영판정검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등)
현역병입영자, 현역병복무지원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전환복무대

상자 및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군사교육소집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실시근거를 마련함.

차. 입영판정검사자 교육소집 중 퇴영근거 마련((안 제111조)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자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조항(법 제5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군사교육소집 퇴영시기를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명시함.

카. 입영판정검사 연기 근거 마련(안 제129조)
입영판정검사 통지된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현역 등 입영희망 입영판정검사 7급자 원신분 유지(안 제135조의2)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 결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 복귀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처분변경 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파. 입영판정검사 관련 병무행정 사무의 위임(안 제156조)
입영판정검사 실시와 이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재신체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하.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여비 등 지급(안 제158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등에 대한 여비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함.

가. 병역기피자 고발대상에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포함(안 제165조)

병역의무기피자 고발대상에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포함.

대통령령 제 호

나. 입영판정검사 조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13조, 안 제23조, 안 제29조의2, 안 제43조)

입영판정검사 도입관련 조문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18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3제5항”으로,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4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서 판정한 군사교육소집통지자의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한다.

1. 법 제14조의3제3항·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제4장제1절에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전지서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입영판정검사전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
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
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실시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
정검사는 입영일 전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병
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5제8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가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를 위하여 입영판정검사를원을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판정검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의3제7항에서 “병역판정검사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로 병역판정검사
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3.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4.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이 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
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2
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처분된 사람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5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4.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5. 제29조제7항·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6. 제43조제7항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이 현역병 입영일이 연기되어 추천 전의 신분으로 된 사람
 7.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8. 법 제11조제1항· 제6항, 법 제14조의2제1항 및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제20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 제23조제5항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7조”를 “법 제14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병원”을 “입영한 날로부터 7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한다)에 군병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7조제2항”을 “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를 “제17조제3항·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가목”을 “제2항제1호가목”으로, “제1항제1호나목”을 “제2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①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및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귀가시킬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① 법 제16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입영하는 사람의 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단서 중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26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29조의3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제36조의2(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3조제4항 중 “신체검사를”을 “신체검사(제18조의4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제18조의5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1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법 제25조에 따라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대상자로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한다.

제110조의2(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법 제55조에 따라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질병”을 “질병”으로, “퇴영(退營)시킬”을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에 퇴영(退營)시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한 날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은 입영일이 지난 때(제18조의5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14조의3제6항 및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입영일 전에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로, “전까지”를 “전까지(입영판정검사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135조의2제3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법 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귀가한”을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하거나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제7호 중 “법 제17조제3항(법 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결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 재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제외

제15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한 사람(이 영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본문에서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3.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제165조제1항 본문 중 “확인신체검사,”를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생략)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 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제18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 -----.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 ③ (생략)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④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26조제2항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3제5항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	-----

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신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

-----.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서 판정한 군사교육소집통지자의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4조의3제4항-----

-----.

④ 제3항-----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Each set consists of a top dashed line, a middle dashed line, and a bottom dashed lin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⑤ 제3항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
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다.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
무청장은 제21조제2항, 제29조
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10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입영
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하

<신 설>

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실시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는 입영일 전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5제8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를 원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

<신 설>

서는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의3제7항에서 “병역판정검사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3.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4.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이 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처분된 사람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
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제2호
에 따라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4.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입
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 제2호
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
역면제 처분된 사람
5. 제29조제7항·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6. 제43조제7항에 따라 의무소
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이 현
역병 입영일이 연기되어 추천
전의 신분으로 된 사람
7.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
라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8. 법 제11조제1항· 제6항, 법
제14조의2제1항 및 법 제14조
의3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
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 9. (생 략)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
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재병
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
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재신
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
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 10. (현행 제4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26조제2항제1호 -----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㉓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가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신 설>

④ ----- 제17조제4항

⑤ 제2항부터 제4항-----

제26조의2(징집된 현역병입영 대

상자의 입영판정검사) ① 법 제
16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로 입영하는 사람의 입영판정검
사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처
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신체
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생 략)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후 귀가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
하는 사람의 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하
여 처리한다. 이 경우 입영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
정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
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치
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
내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
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
다.

제36조의2(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자의 입영판정검사) 법 제22조
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로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입

<신설>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
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
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신설>

<신설>

영판정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6
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신체검사
(제18조의4에 따라 입영판정검
사를 받았거나 제18조의5에 따
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 사람
은 해당되지 않는다)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법 제2
5조에 따라 추천에 의한 전환복
무 대상자로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하여
는 제26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
한다. 이 경우 입영판정검사 결
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
리한다.

제110조의2(보충역 군사교육소집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 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 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 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 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까지(입영판정검사는 전일까지) -----. ----- ----- -----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② (생 략)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 경된 사람이 법 제17조제2항(법 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 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 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③ ----- 법 제14조의3제7항 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하거나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7급으로 판정된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생 략)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	② -----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 략) 7. 법 제17조제3항(법 제56조제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귀가한 사람 에 대한 병역처분·재입영 및 재신체검사 <u><신 설></u>	----- -----.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결과 ----- ----- ----- 7의2. 법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 재신체검사, 입 영판정검사 제외 8. ~ 3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8. ~ 34. (생 략) ③·④ (생 략)	8. ~ 3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 체검사·재검사”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7조제3항 본문(법 제56 조제1항 및 이 영 제29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 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한 사 람(이 영 제29조의2제2항, 제3 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 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3조

<u>람에 대한 재신체검사</u> <u><신 설></u> 3. (생 략)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u>확인신체검사</u>,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② ~ ⑧ (생 략)	<u>의2제4항 본문에서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및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u> 3. <u>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u>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 ----- ----- --- <u>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u> ----- ----- ----- ----- -----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2677